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진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444

발의연월일: 2024. 11. 11.

발 의 자:주진우·박준태·조배숙

조은희 • 윤한홍 • 정연욱

김승수 · 유상범 · 유용원

권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2019년 1월 15일 개정되어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음에도 13세 이상 16세 미만아동·청소년간음·추행 죄를 저지른 사람은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또한, 성폭력·살인 등 고위험 피부착자의 경우에는 주거지 내부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상존하여, 고위험 범죄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보호관찰관이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피부착자가 주거지 내 출입을 강력히 거부하는 경우 강제로 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함.

한편,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전자장치가 부착되기 전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개시되어 구금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고, 전자장치가 부착된 사람이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 전에 저지른 범죄(여죄)로 수용될 경우에도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되지 않아 전자장치 부착기간이 진행 되는 등 전자감독제도의 도입 취지 및 실효성이 약화되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를 추가하고, 보호관찰관이 피부착자의 주거지 등을 출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준수사항에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을 신설하는 한편, 부착명령 개시 이전에 다른 범죄로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구금될 경우 구금이 종료된 날부터 부착명령을 개시하도록 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구금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의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수용된 기간이 부착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관련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의2, 제13조 개정 등).

법률 제 호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다목 중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8조의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요구에 따를 것

제13조제1항제1호 중 "형이나"를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으로, "대한"을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따른 구금이 종료되는 날,"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이후 다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을 "구속영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 고 이상의 형"을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로 하며, 같은 조 제 8항제2호 중 "제6항제2호"를 "제6항제2호 및 제3호"로,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을 "면제·가석방된 때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 종료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16조의3제2항 중 "제4호"를 "제4호, 제5호의2"로 한다.

제27조 중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을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31조 중 "제13조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을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1호·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 중 "제9조의2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를 "제9조의2제1항제 3호·제4호 또는 제5호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제2조(특정범죄 추가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5조에 따른 부착명령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의 죄 등 특정 범죄(이하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라한다)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② 이 법 시행 전에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제5

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본다.

- ③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성폭력범죄로 한정한다)로 그 습벽이 인정되는 사람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습벽이 인정되는 것으로 본다.
- ④ 제21조의2에 따른 보호관찰명령의 청구는 이 법 시행 전에 13세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 당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⑥ 제28조에 따른 집행유예 선고 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죄를 저질러 이 법 시행당시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 제3조(준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1항제5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착명령을 선고하거나 준수사항 부과 등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4조(부착명령의 집행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부착명령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면제 또는 가석방되었거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착명령의 집행 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6항제1호·제2호 및 제8항제2호(제21조의8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와 제27조 및 제31조 의 개정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 또 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	2
의 범죄를 말한다.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	다
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	
간・강제추행 등)・제8조	
(장애인인 <u>아동·청소년에</u>	<u>아동·청소년에</u>
<u>대한 간음</u> 등)·제9조(강	<u>대한 간음 등)·제8조의2</u>
간 등 상해·치상) 및 제1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
0조(강간 등 살인·치사)	<u>동·청소년에 대한 간음</u>
의 죄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
제9조의2(준수사항) ① 법원은	제9조의2(준수사항) ①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	
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	
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신 설>

- 6. (생략)
- ② 삭 제
- ③ (생략)
-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부착 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 ·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 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 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 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 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

<u>.</u>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보호관찰관의 출입 및 점검
요구에 따를 것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1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되거나 형 또는
대한 구속영장의 집행에

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2. (생략)
- ② ~ ⑤ (생 략)
- ⑥<u>다음</u>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
-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
 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 (생략)
- ⑦ (생 략)
- ⑧ 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 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 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 1. (생략)
- 2. <u>제6항제2호</u>의 경우에는 그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u>면</u>
 <u>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u>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따른 구금이 종료되는 날,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의 집	
행이 개시된 이후 다음	
·	
1. 구속영장	
이 그ㅋ 시계시 뭐 ㅠㄴ 뭐ㅋ	
2.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	
<u> 감호</u>	
3.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8)	
<u>.</u>	
1. (현행과 같음)	
2. 제6항제2호 및 제3호	
 면	
	
제 · 가석방된 때 또는 치료	
<u> 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u>	

- 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 여기간을 집행한다.
- ⑨ (생략)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저설치·운영 등) ① (생 략)

② 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장은 피부착자가 제9조의2제1항 각호(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있고 피부착자에 대한 신속한지도·감독을 위하여 긴급히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 제27조(준용)

<u>된</u>
<u><삭 제></u>
⑨ (현행과 같음)
제16조의3(위치추적 관제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현행과 같
<u>⋄</u>
②
<u>제4호, 제5호의2</u>
③・④ (현행과 같음)
1)077 / Z Ó)

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u>제13조</u> <u>제4항·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8항제1호·제9항</u>,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 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 제1항, 제12조, <u>제13조제4항·</u> 제6항제1호·제8항제1호·제9 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 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 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 를 준용한다.

제39조(벌칙) ① 피부착자 또는 보호관찰대상자가 제9조의2제1 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준수사 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③ (생 략)

<u>제13조</u>
제4항, 같은 조 제6항제1호ㆍ
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
제31조(준용)
제13조제4항,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7항, 같은 조 제8항,
같은 조 제9항
<u>.</u>
제39조(벌칙) ①
<u>제</u> 9조의2제1
항제3호·제4호 또는 제5호의2
· ②·③ (혂행과 같음)